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807호)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9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6. 9	
다. 상 정 일 자 : 2003. 6. 18	총무위원회 상정
라. 의 결 일 자 : 2003. 6. 21	총무위원회 수정가결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3. 예산안	기정예산안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68,824,731	151,254,462	17,570,269	11.62
일 반 회 계	161,341,105	144,716,689	16,624,416	11.49
특 별 회 계	7,483,626	6,537,773	945,853	14.47
상 수도 사 업	3,514,979	3,535,106	△20,127	△0.57
하 수도 사 업	354,428	0	354,428	0
주 택 사 업	25,024	23,473	1,551	6.61
의료보호기금 운영	275,382	275,382	0	0.00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1,070,934	1,070,934	0	0.00
농공단지조성사업	758,488	441,433	317,055	71.82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1,316,811	1,023,865	292,946	28.61
중소기업육성기금 운 용	167,580	167,580	0	0.00

3.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3.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161,341,105	100.0	144,716,689	100.0	16,624,416	
세	지 방 세	10,570,000	6.6	10,570,000	7.3	0
	세 외 수 입	15,593,721	9.7	9,452,623	6.5	6,141,098
	경상적세외수입	5,391,638	3.3	5,364,653	3.7	26,985
	임시적세외수입	10,202,083	6.3	4,087,970	2.8	6,114,113
	지 방 교 부 세	61,150,700	37.9	52,855,000	36.5	8,295,700
	지 방 양 여 금	15,180,688	9.4	18,213,000	12.6	△3,032,312
	조정교부금및제정보전금	3,272,200	2.0	2,272,200	1.6	1,000,000
	재정보전금	3,272,200	2.0	2,272,200	1.6	1,000,000
	보 조 금	54,810,796	34.0	50,590,866	35.0	4,219,930
	국고보조금등	32,785,691	20.3	30,434,576	21.0	2,351,115
	도비보조금	22,025,105	13.7	20,156,290	13.9	1,868,815
	지 방 채	763,000	0.5	763,000	0.5	0
국내차입금	763,000	0.5	763,000	0.5	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3.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161,341,105	100.0	144,716,689	100.0	16,624,416	
세	경 상 예 산	35,460,862	22.0	34,930,509	24.1	530,353
	인 건 비	17,425,170	10.8	17,296,841	12.0	128,329
	경상적경비	18,035,692	11.2	17,633,668	12.2	402,024
	사 업 예 산	117,466,319	72.8	102,854,896	71.1	14,611,423
	보 조 사 업	92,173,747	57.1	85,411,651	59.0	6,762,096
	자 채 사 업	25,292,572	15.7	17,443,245	12.1	7,849,327
	채 무 상 환	1,989,000	1.2	1,989,000	1.4	0
출	지방채상환	1,989,000	1.2	1,989,000	1.4	0
	예 비 비 등	6,424,924	4.0	4,942,284	3.4	1,482,640
	예 비 비	3,107,432	1.9	3,219,792	2.2	△112,360
	기 타	3,317,492	2.1	1,722,492	1.2	1,595,000

4.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3.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7,483,626	100.0	6,537,773	100.0	945,853	
세 입	지 방 세	0	0.0	0	0.0	0
	세 외 수 입	7,459,426	99.7	6,513,573	99.6	945,853
	경상적세외수입	2,415,718	32.3	2,284,834	34.9	130,884
	임시적세외수입	5,043,708	67.4	4,228,739	64.7	814,969
	지 방 교 부 세	0	0.0	0	0.0	0
	지 방 양 여 금	0	0.0	0	0.0	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0	0.0	0	0.0	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보 조 금	24,200	0.3	24,200	0.4	0
	국고보조금	16,000	0.2	16,000	0.2	0
	도비보조금	8,200	0.1	8,200	0.1	0
	지 방 채	0	0.0	0	0.0	0
	국내차입금	0	0.0	0	0.0	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3.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7,483,626	100.0	6,537,773	100.0	945,853	
세	경 상 예 산	1,927,598	25.8	1,921,686	29.4	5,912
	인 건 비	123,698	1.7	118,586	1.8	5,112
	경상적경비	1,803,900	24.1	1,803,100	27.6	800
	사 업 예 산	4,790,725	64.0	3,858,994	59.0	931,731
	보조사업	270,382	3.6	270,382	4.1	0
	자체사업	4,520,343	60.4	3,588,612	54.9	931,731
출	채 무 상 환	393,221	5.3	393,221	6.0	0
	지방채상환	393,221	5.3	393,221	6.0	0
	예 비 비 등	372,082	5.0	363,872	5.6	8,210
	예 비 비	159,978	2.1	352,872	5.4	△192,894
	기 타	212,104	2.8	11,000	0.2	201,104

5. 계속비 사업조서 : 2003. 당초예산과 같음

6. 채무부담 행위조서 : 해당없음

7. 명시이월 사업조서 : 해당없음

8. 2003. 제1회추가경정 보조(국고, 도비, 양여금)사업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고보조	도비보조	도분양여금	군분양여금
경정예산액	계	97,231,373	56,703,316	11,621,481	9,923,597	18,982,979
	국 비 (양여금)	47,966,379	32,785,691	0	0	15,180,688
	도 비	22,025,105	8,279,676	5,386,995	8,242,434	116,000
	군 비	27,239,889	15,637,949	6,234,486	1,681,163	3,686,291
기정예산액	계	90,469,279	47,851,868	10,301,420	9,349,991	22,966,000
	국 비 (양여금)	48,647,576	30,434,576	0	0	18,213,000
	도 비	20,156,290	7,306,073	4,610,831	8,139,386	100,000
	군 비	21,665,413	10,111,219	5,690,589	1,210,605	4,653,000
중 감	계	6,762,094	8,851,448	1,320,061	573,606	△3,983,021
	국 비 (양여금)	△681,197	2,351,115	0	0	△3,032,312
	도 비	1,868,815	973,603	776,164	103,048	16,000
	군 비	5,574,476	5,526,730	543,897	470,558	△966,709

10.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 수입 등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사회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편성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인 175억 7,026만 9천원이 증가한 1,688억 2,473만 1천원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의 11.5%인 166억 2,441만 6천원이 증액된 1,613억 4,110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액의 14.5%인 9억 4,585만 3천원이 증액되어 74억8,362만 6천원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17.8%인 178억 1,832만 5천원이 증액된 1,181억 5,038만 9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0.5%인 140억 2,835만원이 증액되어 825억 1,757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64.1%인 106억 5,707만 4천원은 문화예술·관광·체육진흥, 사회보장 및 지역사회 개발비 등 사회개발비에 중점 계상되었고 농수산개발 및 지역경제 개발비 등 경제개발비에 22.5%인 37억 4,68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나머지는 일반행정비 7.9%, 기타 경비에 5.5%로 계상함으로써 현안사업 마무리와 신규사업투자,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금 삭감부분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상 애로가 예상되므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촉구해야 될 것이며,
-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신규사업과 정책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 전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수 없는 사업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업

인지와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세출분야에서 성과별 중점 심의사항으로는

. 기획감사실 소관

- 32페이지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 자치행정과 소관

- 52페이지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운영비지원

- 54페이지 통계연보 및 웹진 제작툴(TOOL) S/W구입

- 55페이지 문화관광 비주얼 시스템 구축

. 종합민원실 소관

- 69페이지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빈집 정비사업비

. 문화관광과 소관

- 87페이지 고성향교 향교지 추록대금

- 89페이지 문화원 농경유물 전시관 건립

- 90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소가야 유물박물관 건립 등)

- 93페이지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

- 94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일반운영비, 문화체육센터 관리 인부임, 수영장운영 약품 구입비

- 95페이지 제3회 전국마라톤대회개최,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 9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비중 군비중액부분, 레포츠 마케팅 타당성 조사 용역

- 97페이지 씨름장 조성사업,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개설사업,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중 군비중액부분,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변경결정 용역비, 실내체육관 보수·보강공사, 문화체육센터 운영 집기·장비 구입 부족분

- 98페이지 공룡나라 축제 홍보동요 노래 제작비(당초예산 삭감분)

- 99페이지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설계용역비

. 재무과 소관

- 111페이지 고성군청사(의회)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청사 누수방지공사

. 사회복지과 소관

- 127페이지 고성군 종합복지관 신축공사(세항 및 금액조정)
- 128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 1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
- 133페이지 공동목욕탕 유류대(당초예산 삭감분)
- 134페이지 탁노소 운영비(과목조정)
- 135페이지 재가노인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과목조정)
- 13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과목조정)
- 14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보수 및 도색

. 주민지원과 소관

- 149페이지 농어촌 보안등 설치

. 보건소 소관

- 157페이지 어신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한방의료장비 및 비품구입(군수관사)

.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 171페이지 공통발자국, 물결화석지 경화처리(1개소),
관광지 해안 백사장 설치(2,400m²)

특히, 실과소에서 정상적 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일반운영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각종 출연금 등 경직성 경비와 5억이상 소요되는 신규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1. 질의 및 답변

- 문 :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지금 향우, 기업체, 기타로부터 받은 협찬 금액은?
- 답 : 오늘 아침까지 1억 9,100만원이 접수되었고, 마산 오우회, 배경자 사장으로부터 300만원 협찬금액을 합하면 1억 9,400만원이 됨.

- 문 : 지금까지 교육발전위원회 법인설립이 안되고 있는 사유는?
- 답 : 지난 5.19자로 법인설립 신청을 도 교육위원회에 했으며, 보완사항이 있어 일주일전에 보완 제출했음.
- 문 : 고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보다 근본적으로 고성에서 공부할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 답 : 지난번 초·중등학교장 간담회 개최시에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공부할수 있는 학교환경이나 풍토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 문 :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의 경우 현재 법인설립 신청이외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 설명없이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 답 : 지난 4. 25 교육발전위원회 전체 총회시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매년 총회에서 다음 년도에 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되어있고, 당해년도 추진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거쳐 결산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문 :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목표액 50억원이 모일 때 까지는 출연금에서도중에 지출이 안되는 것이지요?
- 답 : 당초 교육발전위원회 관련 조례인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수 없으며, 군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한 사업은 위원회의 정관과 운영 세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문 :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2007년까지 목표액 50억원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일몰법 제도에 적용할수 있는지?
- 답 : 집행부에서는 목표액 50억원 조성을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문 :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비가 고성읍은 7천만원, 다른면의 경우 5천만원 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고성읍의 경우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예산금액이 너무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시정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 답 : 인구 비례로 예산을 책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고성읍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숙원 사업 예산을 많이 책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문 :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하계피서지 문고개설 운영비 지원 예산 심사에 앞서, 작년 예산집행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 답 : 작년에 하이면 상죽암에서 개최한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하계피서지 문고 개설운영 상황을 미처 점검하지 못했음.
- 문 : 임의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후 1년에 한번 감사하는 제도가 없습니까?
- 답 : 예산지원후 정산보고를 받고 필요할시 자체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문 : 강도 높은 연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을 말하는지요?
- 답 : 삼성연수원 같은 경우 전문적인 교육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우선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교육방법임.
- 문 : 2002년도 범죄없는 마을이 하일면 수양마을로 선정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범죄없는 마을 기준은?
- 답 : 범죄없는 마을 선정은 경찰서, 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검찰청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문 :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 빈집 정비사업은 자기집을 자기가 철거해야 하므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1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만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
- 문 : 문화체육센터 사업비가 60억 4,100만원이 투입되고 예산 선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설명하는 사유는?
- 답 : 이번 예산에 편성된 군비 9억 9,600만원, 도비 1억 3,100만원중 군비 부분은 재정보전금(도비)으로 임의로 추경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한 내용으로 사실상 도비재원임.

- 문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약품구입비 1천만원은 전체 수영장에만 필요한 약품 구입비입니까?
- 답 : 수영장 개장을 7월에 하면 연말까지 약 6개월분으로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 문 : 문화체육센터 운영 집기·장비 구입비가 당초 1억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약 2배로 증액되었는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람.
- 답 : 당초사업계획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운영상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탠스시설, 수중청소기, 블라인더 등의 시설이 추가 되었음.
- 문 : 도 체육대회 참가 출전비 1,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제안설명 해도 되는가?
- 답 : 사실상 회계질서 및 집행과정으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 문 :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비 5억원은 무엇입니까?
- 답 : 이 부분은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비로 부기상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 문 :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인데 8억원이 증액 되었었는데 이유는?
- 답 : 부지확보가 우선 사업으로 대체농지조성비 1억5천만원 이외 토지 29필지 33,000㎡에 대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 문 : 레포츠 마케팅 타당성조사 용역비 1,500만원은 어떤 용역비입니까?
- 답 : 마동호 주변 칼스포츠 타운과 연계하여 번지점프, 수상스포츠 등 해양 레포츠 관련 시설을 말함.
- 문 : 지방세과세증명서 무인발급 시스템 구축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 답 : 별관 청사앞에 기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발급용 무인발급시스템 이외 추가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도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문 :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비가 기정예산 2천만원에서 추경예산에 5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 답 : 금년 7월1일부터 공공청사 흡연구역 설정관계로 본관 청사와 별관 및

의회청사에 별도 흡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수시로 예상치 못한 수선 공사 발생에 대비한 예산임.

- 문 : 당항포 가족호텔 재건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 : 당항포 가족호텔 재건축에 대비 건물규모 적정성과 사업비 조달방안, 기본설계 내용 준공이후 건축물관리 방안 등의 내용포함 용역비를 말함.
- 문 : 민간위탁금 과목에 있던 탁노소운영비,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과목조정하여 탁노소 운영비는 민간경상 보조과목에 나머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과목에 조정 한 사유는?
- 답 :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과목중 목번호, 목구분과 설정을 착오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업무연찬 부족으로 잘못되어 추경예산 편성시 바로잡게 되었음.
- 문 : 추경예산에 과목조정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해가 안가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 : 업무연찬과 집행될 예산을 잘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과목을 선택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문 : 농어촌 보안등 설치사업비가 추경예산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전읍면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신설할곳, 고장난곳 정비, 불필요한곳 정비 등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2004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 답 : 금년 하반기에 전읍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후 2004년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음.
- 문 : 군수관사 건물을 이용 한방의료장비 및 비품구입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군수관사에서 한방진료시 보건소 기능이 2군데로 분리되는 현상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는?
- 답 : 요즘 한방진료 환자수가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오전 9시 전후가 되면 접수가 마감될 형편으로 군수관사에서 한방진료시 부분적으로 보건소 한방진료 기능을 보완해 주는 기능과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봄.

○ 문 : 당항포 대첩축제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1,000만원 증액되어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가?

● 답 : 2003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2,000만원 삭감되어 3,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예산 포함 4,000만원으로는 원활한 당항포 대첩 축제행사가 되려면 부족한 형편입니다.

12. 토 론 : 없음

13. 심사결과

가.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군수제출안	심 사 사 항		수 정 안	비 고
		삭 감 액	증 액		
계	118,150,389	0	0	118,150,389	
일반회계	115,462,238	0	0	115,462,238	
특별회계	2,688,151	0	0	2,688,151	

나.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군수제출안	심 사 사 항		수 정 안	비 고
		삭 감 액	증 액		
계	82,517,576	1,140,000	1,140,000	82,517,576	
일반회계	79,829,425	1,140,000	1,140,000	79,829,425	
특별회계	2,688,151	0	0	2,688,151	

다. 예산삭감 및 수정현황

○ 세입부문 : 변동없음

- 세출부분 : 1210-1211-420-306-01 출연금외 5건 1,140,000천원을 삭감하여 3220-3223-120-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0,000천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 1,130,000천원은 5410-5411-400-801 예비비로 이관함.

덧붙임 :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증감액조서 1부.

2003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削減額調書

總 務 委 員 會

2003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削減額調書

一般會計
歳出部門

(單位：千圓)

科 目				郡守提出 豫算案	修 正 案		修 正 豫算額	修 正 内 譯
項	細項	細細項	目		減 額	増 額		
1210	1211	420	306-01	500,000	500,000		0	o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220	1223	120	307-03 사회단체보조금	154,400	5,000		149,400	o 새마을분고 고성군지부 운영비
2110	2112	220	401-01	1,015,000	500,000		515,000	o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
2120	2121	120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381,700	15,000		366,700	o 도체육대회 참가 출전비
2120	2121	220	401-01	2,085,300	100,000		1,985,300	o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2210	2211	22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1,325	20,000		41,325	o 한방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
계 6 건					₩1,140,000			

2003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増額調書

總 務 委 員 會

2002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増額調書

一般會計
歳出部門

(單位：千圓)

科 目				郡守提出 豫算案	修 正 案		修 正 豫算額	修 正 内 譯
項	細項	細細項	目		減 額	増 額		
5410	5411	410	801 예비비	3,137,432		1,130,000	4,267,432	o 예비비
3220	3223	120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44,000		10,000	54,000	o 당항포 대첩 축제
계						₩1,140,000		